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17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송언석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신동욱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희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이종배 · 이종욱 · 이철규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한기호 · 한지아 의원
(107인)

주 문

2025. 12. 9.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자, 국민의힘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시작됨. 첫 번째 발언 의원으로 나경원 의원이 정당한 무제한토론을 이어나감.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하는 도중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이유로, 발언석의 마이크를 끄고 켜는 등을 반복,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규정을 이유로 녹음 기능이 있는 소형 무선 마이크 사용을 두고,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이라 지적하며, 급기야는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를 근거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며 정회를 선포함.

과거 무제한토론 중,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소설을 읽고 노래 불렀음에도 의제 외 발언 금지를 사유로 마이크를 끄며 발언을 차단하거나,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도 분명히 남아있음.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행동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전례를 무시한 의사방해이자, 헌정사 전례 없는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킨 의사 진행권의 남용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는바,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제안이유

국회의장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 운영 책임자로서 국회의 기능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또한 「국회법」 제20조의2는 국회의장이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의 중립적 조정자로서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사진행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임.

2025년 12월 9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분만에 발언 중간에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정상적인 토론을 방해하였고, 약 10분 경과 후에는 나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 차단을 지시하는 조치를 함. 이는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47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서 국회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반행위임.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최고의사결정회의로서, 모든 안건은 국민 앞에서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심사를 거쳐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의 대상이었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절차적 결함을 본회의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야당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자 입법부에게 부여된 견제 기능의 정상적 행사에 해당함.

특히 무제한토론은 소수파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제도적 권한으로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안건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절차적인 결함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심사과정의 미비를 환기하기 위한 입법부 고유의 견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으로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나아가 발언 도중 정회를 선언한 행위는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00조를 명백히 위반하여 야당의 토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무제한토론제도의 입법취지와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국회의장이 소수파의 권한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조정자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림. 이러한 행위는 야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

공평하게 발언하고 국정 현안을 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국회의장의 본질적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부의 견제·균형 기능을 약화시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한편 본회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녹음기나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의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발언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에 대해서만 의제와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입하고, 발언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만 권한을 행사한 것은 동일·유사한 상황에 대한 처분 기준을 스스로 달리한 것으로서 형평성과 일관성을 현저히 상실한 조치임.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행동은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국회법」 제100조(발언의 계속)를 무시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례를 무시한 의사방해이자, 헌정사 전례 없는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킨 의사 진행권의 남용임. 이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우원식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있음.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만이 잘못된 「국회법」을 적법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일 것임.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